

‘(산업통상자원부)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
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일

(산업통상자원부)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

1. 보험료 적용기준

가. 고용보험의 보험료

- (보험료 비용) 노무비×율
- (보험료 요율)

공사금액 (추정금액)	1200억원 이상	950억원이상 1200억원미만	550억원이상 950억원미만	400억원이상 550억원미만	220억원이상 400억원미만	130억원이상 220억원미만	130억원 미만
요 율	1.57	1.30	1.13	1.06	1.03	1.02	1.01

- (적용대상) 모든 전기공사

나.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

- (보험료 비용) 노무비×율
- (보험료 요율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
- (적용대상) 모든 전기공사

다.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

- (보험료 비용) 직접노무비(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)×율
- (보험료 요율) 「국민연금법」 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
- (적용대상)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
라.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

- (보험료 비용) 직접노무비(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)×율
 - (보험료 요율)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
 - (적용대상)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- 마.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
- (보험료 비용)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(라향)×율
 - (보험료 요율)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
 - (적용대상)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

2. 적용방법

-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

3. 적용시기

-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(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) 적용한다.
-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40호, 2020. 3. 31)는 폐지한다.

4. 재검토기한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)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